

모자보건사업-난임부부지원(국비)

1 기본 현황

□ 사업개요

사업기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연례반복										
사업위치											
총사업비	<table style="width: 100%; border: none;"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총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(국비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(사비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(보조율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(구비)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,982,300천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9,222,700천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10,759,600천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46.2 %</td> <td></td> </tr> </table>	총	(국비)	(사비)	(보조율)	(구비)	19,982,300천원	9,222,700천원	10,759,600천원	46.2 %	
총	(국비)	(사비)	(보조율)	(구비)							
19,982,300천원	9,222,700천원	10,759,600천원	46.2 %								
사업내용	○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(체외수정 및 인공수정)										
사업형태	<input type="checkbox"/> 직접수행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자치단체 보조 <input type="checkbox"/> 민간이전 <input type="checkbox"/> 출연출자 <input type="checkbox"/> 민간위탁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										
사업시행주체	자치구보건소										

□ 사업 성격 및 사전절차 대상 여부

신규	계속	투자심사	학술용역	기술심사	자방보조심사	정보화심사	공유재산	안전예산	출자·출연
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경상	투자								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							

□ 지역보조사업 형태 및 법령근거

지원형태	법령근거	보조금심의회 결과
사업보조	모자보건법 제3조, 제9조, 제11조	적정
운영비보조		

□ 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시민건강국	건강증진과	박경옥 2133-7560	박금옥 2133-7576	김승희 2133-7577

2 예산 설명

□ 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5년 예산액	2016예산액 (A)	2017예산(B)	증감 (B-A)	(B-A)*100/A
계	(x6,797,200) 14,686,450	(x7,484,200) 16,215,900	(x9,222,700) 19,982,300	(x1,738,500) 3,766,400	(x23) 23
자치단체경상보 조금	(x6,797,200) 14,686,450	(x7,484,200) 16,215,900	(x9,222,700) 19,982,300	(x1,738,500) 3,766,400	(x23) 23

□ 예산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

과목구분	세부 산출내역
자치단체경상보조금	○ 난임부부지원사업 1,821,856원*16,874명*0.65 = 19,982,300천원

3 사업 설명

□ 사업목적

- 난임부부 시술비, 청소년산모 및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하여 저출산 극복 및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 도모

□ 사업근거

- 모자보건법 제3조, 제9조, 제11조
- 보건복지부 사업 안내

□ 사업내용

- 지원대상
 -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: 임신을 원하는 모든 난임부부
- 사업기간 : 2017. 1. ~ 12.
- 사업내용
 -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 - ▷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가구 ⇒ 2016.9.1.부터 모든 난임부부로 지원 대상 확대 지원
 - ▷ 가구소득 100%이하 : 총 7회 1,110만원이내 인공수정(회당 50만원) 3회, 체외수정(회당 240만원) 4회
 - ▷ 가구소득 100~150%이하 : 총 6회 720만원이내, 인공수정(회당 50만원) 3회, 체외수정(회당 190만원) 3회
 - ▷ 가구소득 150%이상 총 6회 360만원이내, 인공수정 (회당 20만원)3회, 체외수정(회당 100만원) 3회

- 총사업비 : 19,982,300천원(국비9,222,700천원, 시비10,759,600천원)
- 재원분담비율 : 국비30%, 시비35%, 구비35%

□ 추진경위

-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 - '06년 제외수정 시술비 지원 시작 : 2회, 1회당 150만원이내
 - '09년 제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 : 3회
 - '10년 인공수정 시술비 신규 지원 : 3회, 1회당 50만원이내
 - '11년 제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 : 4회, 1~3회차 180만원, 4회차 100만원이내
 - '13년 제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 : 4회차, 100만원이내 → 180만원범위내 확대
 - '14년 제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 : 6회까지 지원(신선배아 3회, 동결배아 3회)
 - '15년 제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 : 신선배아 시술비 180만원에서 100만원 → 190만원이내 확대
 - '16년 9월부터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소득기준 150%이하에서 모든 난임부부로 시술비 지원확대

□ 중점추진사항(사업추진의 필요성)

- 임신 출산 지원을 통한 저출산 극복, 임산부의 건강증진 도모

□ 사업추진절차

- 기본계획수립, 지침시달 (복지부)
- 보조금 교부 (보건복지부-시-자치구)
- 보조금 집행 (자치구)
- 정산 및 실적보고 (자치구-시-복지부)

□ 2017년도 추진일정

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계		19,982,300	
기본계획 수립	2017.01~2017.01		
보조금 교부 및 집행	2017.01~2017.12	19,982,300	분기별 예산 교부
보조금 집행 및 정산	2017.01~2017.12		

4 사업 효과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

2014년도	○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: 14,856건
2015년도	○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: 16,786건
2016년도	○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: 18,000건

□ 향후 기대효과

○ 저출산 극복 및 임신부의 건강증진 도모

5 최근 3년 결산 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당초예산	전년이월	예산변경	예산현액	집행액	차년이월	집행잔액
2013	(x5,249,662) 11,333,468	(x-) 0	(x-) -330,341	(x5,249,662) 9,240,468	(x4,283,662) 9,240,468	(x-) 0	(x966,000) 0
2014	(x6,008,255) 12,977,086	(x-) 0	(x-) 0	(x5,808,255) 12,543,753	(x5,808,255) 12,543,753	(x-) 0	(x-) 0
2015	(x6,260,500) 13,523,550	(x-) 0	(x-) 0	(x6,797,200) 14,686,450	(x6,497,200) 14,036,450	(x-) 0	(x300,000) 650,000